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발의제출일	심사경과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5784	강득구의원 등 10인	'24.11.22.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0.)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9.16.)
	2206799	이학영의원 등 10인	'24.12.20.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2.19.)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9.16.)
	2209368	김병기의원 등 10인	'25.3.26.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9.16.)
	2209502	이헌승의원 등 14인	'25.4.1.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9.1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9.18.)는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안 제23조제1항).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25조제1항).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1조).

3. 부대의견

법률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의 시·도 직접 운영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자치권 보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다목 중 “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1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6항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제1항 중 “개인 및”을 “출판업체 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를 “직접 운영하여야”로 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략)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5.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교도소· <u>보호감호소</u> · <u>치료감호소</u>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다. ----- <u>국립법무병원</u> ----- ----- ----- -----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 ⑦ (생략)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u>제6항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u>
⑧ (생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

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41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
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출판업체 또는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

직접 운영하여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
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u>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u>	<u>령으로 정한다.</u> <u>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	---